

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정 2015. 7. 30. 조례 제2647호
일부개정 2020. 7. 10. 조례 제3213호(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22. 6. 27. 조례 제3424호(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정공시심의위원회) ① 안양시장은 재정공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안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」가 대행한다. <개정 2022. 6. 27.>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

제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5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10.>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7. 10. 조례 제3213호,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
지급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9 까지 생략

⑦0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⑦1 부터 ⑧6 까지 생략

부칙 <2022. 6. 27. 조례 제3424호,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
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안양시 보조금심의위원회”를 “안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”
로 한다.

② 생략